

전주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4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이학운, 정형윤, 정지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혜성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준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11. 23.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가단2514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9. 7. 11. 접수 제174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한편, 원고는 2020. 3. 4.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주식회사 C의 D은행에 대한 채무 181,186,77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과 연대보증인 B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채권이 원고가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복전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의 2018년도 재무제표상 2018. 12. 31. 기준 당기 매입채무가 전년도(2017. 12. 31. 기준) 130,452,611원에 비하여 1,015,393,787원으로 늘어난 사실, 주식회사 C이 2017. 7.

11.경부터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일부 미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8개월 정도 경과한 2020. 3.

4.경 비로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1개월이 경과한 2020. 4. 7.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은행에 대위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점,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이미 토지가격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김범준, 판사 신태광